

# 제321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폐회중)

국회사무처

일 시 2014년1월2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220호)

###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된 안건

- |                                      |   |
|--------------------------------------|---|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 1 |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 1 |

(17시30분 개의)

○위원장 주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특위 활동 결과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 20일자로 민주당의 박기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노용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박기춘 위원님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사는 다음 기회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7시31분)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장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심사한 58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였고, 요구에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및 공직입 후보경력 등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의 게재와 같은 제재조치에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확대하여 유권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개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투표소 등 설치장소의 확보,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 등의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월에 정치개혁특위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선거 공천제를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합의를 못 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2월 국회에서 또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백재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학용 지방교육자치관련법 심사소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임명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교육의원 선거제도 및 교육위원회 존속에 관한 사항,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 관련 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들은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되, 투표용지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유지에 관한 사항은 금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여야 합의하에 그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해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교육감 등 교육 관련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기호 순으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선거에 한해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별로 공평하게 순환되도록 하면서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하는 형태의 '가로열거형 기초의원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일몰 예정인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시도별 인구 상·하한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서 조정가능한 지역은 조정하

고, 조정 불가 시 분구·통합하되, 현행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의원 정수는 시도별 기본정수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으로 정수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의원 1인당 평균인구가 많은 시·군·구 순으로 추가적으로 분구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상·하한 범위 내에 있거나 범위 내로 조정가능한 지역이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도 의원 정수 일부를 증원하고, 이를 위해 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1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14의 범위 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시·군당 의원 정수 2인을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하되, 부산 강서구, 강원도 영월군,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읍·면·동 분할을 통해서 의원 정수 2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28개 선거구를 조정하고 18개 선거구를 분구하였으며 6개 선거구를 통합하여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의회의 의원 정수의 경우에는 총인구 증가가 없었던 시도를 제외한 인구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21명을 증원하여 의원 정수를 현행 2876명에서 289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김학용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상정 위원 저기, 김학용 위원님!

○소위원장 김학용 예.

○심상정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가로열거형 기초의원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희정 위원 실제 양식을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학용 이게 원래는 소위 교호순번제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국어학적으로 보면 교호(交互)라는 것이 2개를 가지고 교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명, 4명, 5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확한 명칭이 ‘가로열거형 기초의원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위 선거구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각 기초단위별로. 그렇게 되면 소위 투표인의 등가성이 번호별로 사람마다, 후보자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지금 선거구가 몇 개 있지요? 160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죽 나열해 놓고 3명이 나오면 3명이 돌아가는 것으로, 계속 잘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투리가 남는 것은 하나가 남든지—하나가 남을 테지요, 끄트머리 가서—하나나 둘이 남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번호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용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용지를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 총 일곱 번을 찍게 돼 있습니다. 일곱 번을 찍게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교육감 선거만 교육에 관한 선거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가로열거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고요.

과거와 같은 용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6월 4일 선거에도 6장의 용지는 이렇게 나오고 1장의 경우에만 이렇게 가로열거로 나와서 확실하게 유권자들이 교육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찍어서 소위 로또 교육감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심상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심상정 위원 뭐 그냥……

○위원장 주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학용 답변이 좀……

아니,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김학용 위원 답변이 시원찮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의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호영 심상정 위원님, 참고로 교호라는 말을 수사하는 데 써서 제가 그것이 맞는 말인지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하고 학자들 몇 분 자문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순환배열이라는 말을 거기서 얻은 말로 아마 용어를……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계속 돌린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주호영 예, 그렇습시다.

그래도 완전히 투표용지가 100% 공정하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공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윤석 위원님!

○張倫碩 委員 이 법문안 정리를 하다가 착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張倫碩 委員 제108조 개정 사항입니다.

제108조를 개정……

○위원장 주호영 혹시 정오표 보셨습니까?

○張倫碩 委員 예, 봤습시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張倫碩 委員 제108조를 개정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는 대상을 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외에,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문 개정을 이번에 하게 됐습시다.

그 법문을 하는 과정에 현행 제108조제3항제1호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이 부분을 우리 정개특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이 법문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 그게 누락이 됐으면 그 법안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시다.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위원

님 말씀이 맞습시다.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제108조제3항제1호에 있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부분은 이 정오표에 몇 호든지 추가를 하고 1, 2, 3, 4호는, 여기도 보면 타자에 6호인데 5호로 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호는 선관위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잘 협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법문을 완성을 했으면 좋겠습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그렇습시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착오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주호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금년에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존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교육 관련 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3년으로 조정·유지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고견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교육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와 교육부 양 기관에서는 법률안 심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조금 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위원장 주호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선거 제도의 개선이라는 과제를 부여 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4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6

번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그리고 세 차례의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수차례의 관련 부처 실무자 합동회의 등을 통해서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정당공천 제도, 교육감 선출 방식 등 지방선거 제도와 교육자치선거 제도의 근간을 바꿀 제도 개혁까지를 목표로 했었으나 시간적인 제약과 견해 차이로 부득이하게 다음 특위 활동 기간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이번 특위에서는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과 불공정행위의 척결 등 여야 모두 개선에 공감하는 사안만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관계법은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으로서 여야 각 정파의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여야의 각 입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차례의 조정과 역지사지의 배려로 다행히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정리되어서 오늘 원만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법률개정안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에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선거문화를 크게 향상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과 특위 활동에 진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주신 백재현 간사님과 김학용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휴일도 반납하고 실무 작업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희정 위원** 저는 교육자치소위여서 지방선거 관련법 심사 소위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오늘 아침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2월 국회

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계속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에서는 불공정행위의 척결에서 여야가 공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통과시켰다라고 얘기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추천받은 여성 후보자의 사퇴 제한을 규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불공정행위의 척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사퇴하는 경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당이나 사실 공천권에 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사퇴하는 여성 후보가 없도록 하자라는 것에 합의를 한 내용인데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유독 광역이나 기초의회에서 여성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고도 미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을 한 후에도 사퇴를 하는 현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백재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희정 위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뜻과 반해서 정당이나 해당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음이 지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공천 확보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30%를 의무 조항으로 할 정도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정당인데 실제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가 특히 여성 후보자 사퇴가 가장 많은 당이기도 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은 통계……

○**김희정 위원** 예, 제가 현재 통계 사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여성을 30% 하라고 하니깐 공천은 해 놓고서, 더군다나 그 공천……

○**백재현 위원**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김희정 위원** 사퇴를 시키는 이런 일이 더 이

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이 합의를 해 놓고도 빠졌는지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주호영** 예,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김희정 위원님이 1소위 않고 2소위에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성 공천과 관련된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연동돼 있습니다. 공천제가 폐지돼 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당공천제와 연동된 사항인 만큼 이 사항을 지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는 데에서 김희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공천제와 연동돼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에서 빼야 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위원장 주호영** 되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것은 지방선거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논의하면서 함께 잘 정리를 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여성 후보자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재현 위원** 정당공천제가 전제가 돼야만 그 논의가 중심이 있고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연동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김희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당은 정당공천제를 꼭 폐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안건이 못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의결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후보자는 누구보다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이 사회에 밝혀도, 충분히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함

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든 시장·군수든 거기에 보면 한 20% 이상, 신청자 20% 이상이 범죄 경력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런데 범죄 경력에 대해서 알권리를 지금 사실상 제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일반 사사로운 범죄 이런 거라면 뭐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폭력, 절도, 사기 또 마약범, 장애인 성범죄 이런 것이, 이게 사회에 알권리로 보장을 해 줘야지……

이것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선출직들이 앞으로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것을 꼭 관철시킨다는 의미보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성범죄자가 있었고 성추행자가 있었고 또는 사기 전과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국회의원들은 서로 알지만 유권자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대단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특위가 원래 1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2월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덜 된, 마무리 덜 된 쟁점들은 연장된 기간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장된 특위 기간 중에도 최대의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오늘처럼 많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 명절 귀향 활동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 성 주	김 학 용	김 회 정	도 종 환
박 대 동	백 재 현	성 완 중	심 상 정
윤 후 덕	이 노 근	이 우 현	장 윤 석
주 호 영	황 주 흥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이	창	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	관	서	남	수
차	관	나	승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무 총 장		문	상	부
선 거 정 책 실 장		윤	석	근
안 전 행 정 부 관		김	기	수
자 치 제 도 정 책 관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기춘	노웅래	민주당	2014. 1. 20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세연·이주영·민현주·박인숙·송영근·정갑윤·서용교·민병주·이운룡·이이재 의원 발의)

12월 2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0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홍종학 의원 발의)

12월 2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4 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미희·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이석기 의원 발의)

12월 3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6 김선동·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광진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0 김현숙·강은희·박인숙·윤명희·이주영·권은희·신의진·박성효·신동우·김무성·김종훈·홍일표·박민식·민병주·신경림·문정림·황인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12. 6. 7 이용섭 · 한명숙 · 장병완 · 김현 · 안민석 · 양승조 · 진성준 · 박지원 · 이윤석 · 홍영표 · 이언주 · 임내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 원혜영 · 배기운 · 김상희 · 진성준 · 오제세 · 조정식 · 김현 · 이석현 · 민병두 · 김용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2. 7. 26 이목희 · 최규성 · 김현미 · 이미경 · 이석현 · 정성호 · 인재근 · 송호창 · 박완주 · 우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9. 4 진선미 · 장하나 · 정성호 · 이미경 · 배기운 · 홍종학 · 전병헌 · 문병호 · 김광진 · 김민기 · 신경민 · 유성엽 · 최민희 · 윤후덕 · 강동원 · 전정희 · 김재윤 · 은수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2. 9. 5 장병완 · 전병헌 · 노웅래 · 조정식 · 배재정 · 양승조 · 강기정 · 김영주 · 김동철 · 유인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4 이윤석 · 이찬열 · 박혜자 · 민홍철 · 김현 · 신장용 · 이미경 · 배기운 · 부좌현 · 박기춘 · 홍영표 · 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25 장하나 · 김현미 · 윤후덕 · 신경민 · 박수현 · 유은혜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도종환 · 한명숙 · 윤관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2 정진후 · 김제남 · 박홍근 · 박원석 · 유성엽 · 심상정 · 서기호 · 노회찬 · 강동원 · 이목희 · 홍영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9 이상규 · 김선동 · 오병운 · 이석기 · 김미희 · 정진후 · 김제남 · 김재연 · 이석현 ·

金永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0 장하나 · 조정식 · 한정애 · 배재정 · 임수경 · 박홍근 · 배기운 · 신경민 · 윤관석 · 김한길 · 김광진 · 서영교 · 김제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2. 27 윤후덕 · 이찬열 · 최원식 · 배기운 · 문병호 · 이윤석 · 김승남 · 윤호중 · 민홍철 · 이해찬 · 김광진 · 강동원 · 남인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0 원혜영 · 김성곤 · 배기운 · 전병헌 · 문병호 · 민홍철 · 이미경 · 백재현 · 인재근 · 김윤덕 · 유기홍 · 조정식 · 강동원 · 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8. 20 김광진 · 배기운 · 유성엽 · 김우남 · 우원식 · 김승남 · 윤호중 · 김기준 · 김재연 · 민홍철 · 유은혜 · 진성준 · 송호창 · 정호준 · 추미애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장하나 · 최동익 · 우윤근 · 윤후덕 · 전순옥 · 남인순 · 김태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3 신경민 · 김용익 · 최민희 · 김재윤 · 추미애 · 인재근 · 전순옥 · 노웅래 · 남인순 · 변재일 · 강창일 · 정호준 · 김현미 · 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7 이상민 · 최원식 · 문병호 · 노영민 · 노웅래 · 김재윤 · 이원욱 · 최민희 · 양승조 · 안민석 · 박수현 · 김기준 · 도종환 · 이종걸 · 박완주 · 강창일 · 박병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31 이상규 · 김선동 · 김미희 · 김재연 · 이석기 · 오병운 · 장하나 · 박주선 · 이만우 · 김재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 이상규 · 장하나 · 김선동 · 김미희 ·



김재연 · 이석현 · 이석기 · 오병운 · 박주선 · 이만우 · 서영교 · 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17건 2014년 1월 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1. 7 류지영 · 김정록 · 이에리사 · 신경림 · 이자스민 · 황인자 · 송영근 · 윤명희 · 김을동 · 문정림 의원 발의)

1월 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0 이우현 · 이노근 · 김학용 · 장윤석 · 성완중 · 홍문중 · 박창식 · 노철래 · 김을동 · 박대동 · 강기윤 의원 발의)

1월 13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3 심상정 · 장하나 · 강동원 · 김제남 · 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남인순 · 박주선 · 김상희 · 이목희 · 홍종학 의원 발의)

1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 발의)

(2012. 9. 3 박성효 · 김기선 · 강석훈 · 이한성 · 정성호 · 박인숙 · 이완영 · 이노근 · 황진하 · 박민식 · 윤진식 · 민홍철 · 이강후 · 최봉홍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26 고희선 · 김한표 · 신의진 · 윤명희 · 정희수 · 유승우 · 이재영 · 김희국 · 이재오 · 전하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2 김재원 · 정몽준 · 이인제 · 김무성 · 남경필 · 정의화 · 이주영 · 송광호 · 김재경 · 고희선 · 강석호 · 김광림 · 이철우 · 유재중 · 김세연 · 홍일표 · 권성동 · 김용태 · 경대수 · 김동완 · 이이재 · 이우현 · 金永柱 · 현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8 최재성 · 김성곤 · 김용익 · 김현미 · 유은혜 · 이낙연 · 이상직 · 이해찬 · 정성호 · 조정식 · 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 이한성 · 김재원 · 유승우 · 정수성 · 이강후 · 안홍준 · 류지영 · 송영근 · 김정록 · 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1 이재오 · 유인태 · 김용태 · 이낙연 · 이만우 · 이주영 · 심재권 · 전순옥 · 박민수 · 신성범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6 윤후덕 · 강동원 · 강석호 · 김광진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완 · 김무성 · 김미희 · 김상민 · 김선동 · 김영주 · 김영환 · 남인순 · 노영민 · 도종환 · 문재인 · 민홍철 · 배기운 · 백재현 · 부좌현 · 서영교 · 신장용 · 원혜영 · 유은혜 · 윤관석 · 윤명희 · 윤호중 · 은수미 · 이낙연 · 이상민 · 이상직 · 이석현 · 이주영 · 이찬열 · 이학영 · 이현재 · 임내현 · 장하나 · 전순옥 · 전해철 · 정호준 · 최원식 · 추미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7 박남춘 · 배재정 · 배기운 · 임수경 · 김성곤 · 서용교 · 이목희 · 장하나 · 이찬열 · 박민수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류지영 · 문정림 · 윤명희 · 신경림 · 민병주 · 조명철 · 최봉홍 · 이만우 · 주영순 · 강은희 · 송영근 · 김장실 · 김정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 3 류지영 · 문정림 · 윤명희 · 신경림 · 민병주 · 조명철 · 최봉홍 · 이만우 · 주영순 · 신의진 · 강은희 · 송영근 · 김장실 · 김정록 의원 발의)

이상 10건 2014년 1월 1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8 정희수 · 안홍준 · 한기호 · 서용교 · 주영순 · 이종훈 · 류지영 · 김춘진 · 이명수 · 이에리사 · 황진하 · 김동완 · 한선교 · 김상훈 · 김재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23 심상정·장하나·강동원·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남인순·박주선·김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1. 3 김태원·이노근·김학용·이종진·최봉홍·서용교·이현재·김기선·전하진·김명연·박덕흠·김영우·송영근·박명재·경대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7 이노근·김학용·이우현·장윤석·윤후덕·김기선·김상훈·이채익·정문현·안종범·김진태·길정우 의원 발의)

이상 4건 2014년 1월 2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1 최재성·최민희·윤호중·백재현·배기운·박범계·이원욱·한명숙·김현·전해철·원혜영·박홍근·유은혜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박성호·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윤영석·최봉홍·김태원·박성효·김상훈·권은희·홍문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정진후·배재정·박홍근·이학영·서영교·장하나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 23 김학용·이우현·장윤석·이노근·박대동·성완중·전하진·이강후·이현재·박덕흠·안덕수·주영순·박윤옥·최봉홍·김태원·박성효·권은희·송영근·홍문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4일 회부됨